

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업무 관련 FAQ

연번	구분	답변
1	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란	1~3
2	가입 관련	4~6
3	신고서 작성 <small>*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작성 매뉴얼 파일 참고</small>	7~12
4	처리기간	13
5	수수료/결제 안내	14~16
6	공급자적합성확인증명서	17~19
7	양도양수	20

1.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도가 무엇인가요?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3조 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**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**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**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내용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(이하 “관리원”이라 한다)에 신고**하여야 하며,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리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* 변경 신고 사항 : 사업자 정보(회사명, 대표자, 주소), 파생모델, 부품 변경 등
- **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**은 **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** 하시고, **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.**

1-1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도 신고하여야 하나요?

-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**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**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**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즉시 작성·비치**하시고, **관리원에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.**

2.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전기용품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을 따르며 동법 운용요령 별표 1, 별표 2, 별표 3에서 대상 세부 품목명 확인 가능합니다.

3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이 시행되는 2017년 1월 28일 이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이행한 전기용품 또는 제품의 인증구분이 안전확인에서 공급자로 변경되었는데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?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시행 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은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. 다만, **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변경신고를 진행** 하여야 하며, 동법 시행 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은 통관 또는 출고 전에 관리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4. 회원 가입 시, 회사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회사비밀번호가 뭔가요?

- 회사 비밀번호란,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한 회사에서 다수의 아이디 생성 시, 신고했던 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비밀번호 분실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기존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기존회원정보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-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시고, 본인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자료(ex. 사업자등록증, 담당자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)를 바탕으로 권한부여를 통해 접속가능하십니다.

6. 가입을 했는데 승인이 필요하다고 뜹니다. 바로 적합성신고를 할 수 없나요?

- 사이트는 관리자의 회원가입 승인 이후 이용 가능하며, 승인까지는 근무일 기준 최대 1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* 빠른 승인이 필요한 경우 supply@kips.kr로 요청 메일 또는 1670-4920 (내선5. 공급자적합성신고 문의)로 연락 주시길 안내드립니다.

7.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-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(별지 제17호서식)가 필요합니다.
- 공급자적합성확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.

8.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시 제품명을 법정용어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, 해당 제품이 법정 제품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?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과 유사한 기기로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인 경우라면 ‘그 밖에 가목부터 □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(○○)’의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* □ :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1~3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품목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
○○ : 유사한 기기의 법적 세부 품목명
ex) 신고하고자 하는 기기가 ‘비디오카메라’와 유사한 기기로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이라면 제품명작성은 [그 밖에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(비디오카메라)]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- **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명 확인 방법 : 제품안전정보센터(safetykorea.kr) > 안전정책 > 제품안전 대상품목 > 전기용품 > 공급자적합성확인

9. 과거 별지서류를 보유하고 있는데 변경신청 시 별지를 수정해서 제출 가능한가요?

- 과거 변경신청시 별지 양식 서류가 필요서류였으나 현재는 별지양식은 제출 서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별지는 제출 생략해 주시고 별지 수정 서류는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.

10. 적용안전기준은 어떻게 확인하고 작성하면 되나요?

- 적용안전기준은 제품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성적서를 확인하시고 작성 바랍니다.
- *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[별표 25]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 기준 현황(제63조 관련) 참고

11. 위임서류가 무엇인가요?

- 위임서류는 대행업체가 신청인일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일반적인 신고의 경우는 생략하시고 공급자적합성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
12. 파생모델명 적는 칸이 모자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
- 온라인 신고내역 하단 부 별지추가를 체크하시면 별지 작성칸이 활성화됩니다. 해당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(별지 추가 사유 : 파생모델 기입)

13.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(변경)업무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-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(변경) 업무의 처리 기간은 각각 7일입니다. (주말, 공휴일 제외)

14.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(변경)업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?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43조 제1항 12호에 따라 신고와 변경 신고 각각 모델당 11,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(부가세 포함)

15. 수수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입금 계좌 : 우리은행 1005-703-566500 (한국제품안전관리원)
접수번호당 11,000원(부가세 포함)
입금자명 : 신고하시는 업체명 또는 접수번호
- * 세금계산서 청구, 카드결제 등의 다른 결제방식을 희망하시는 경우 supply@kips.kr로 요청 메일 또는 1670-4920 (내선5. 공급자적합성신고 문의)로 연락 주시길 안내드립니다.

16. 수수료는 미리입금해도 되나요?

- 수수료 입금은 처리상태가 '입금확인중'일 때 요청드립니다.
- * 접수된 신고내역은 순서대로 검토되며, 검토 후 상태가 '입금확인중' 으로 변경됩니다.

17.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기본모델 정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.

- 발급된 자료는 변경된 내용 확인이 가능한 별지 제19호서식인 변경신고 증명서입니다. 기존 발급 받으신 별지 제18호서식 뒤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길 안내드립니다.

18.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제품에 표기해야 하나요?

-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표시사항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 9 및 안전기준에 따라 표기하며, 관리원에서 발급하는 공급자적합성신고 발급 번호의 경우 표시의무는 없습니다.

19. 수입제품의 통관 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가 필요한가요?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**출고 또는 통관 전에**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하며, 통관 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(별지 제17호서식)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(별지 제18호서식)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- * 통관된 후에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동법 제51조 과태료 규정에 의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20.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?

- 양도양수계약서 확인을 통해 가능하며, 필수로 확인되어야 하는 정보 등이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supply@kips.kr로 요청 메일 또는 1670-4920 (내선5. 공급자적합성 신고 문의)로 연락 주시길 안내드립니다.